

#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개요

#### 1. 세입예산

-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도 최종 예산 대비 41.2% 감액된 2억 6천 3백만원임.

#### 〈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 예산 편성(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세입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234,780	447,464	263,082	28,302	△184,382	12.1	△41.2
세외수입	234,780	447,464	263,082	28,302	△184,382	12.1	△41.2
경상적세외수입	14,439	39,251	31,656	17,217	△7,595	119.2	△19.3
이자수입	14,439	39,251	31,656	17,217	△7,595	119.2	△19.3
임시적 세외수입	220,341	408,213	231,426	11,085	△176,787	5.0	△43.3
보조금 반환수입	220,341	408,213	231,426	11,085	△176,787	5.0	△43.3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세입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234,780	447,464	263,082	28,302	△184,382	12.1	△41.2
세외수입	234,780	447,464	263,082	28,302	△184,382	12.1	△41.2
경상적세외수입	14,439	39,251	31,656	17,217	△7,595	119.2	△19.3
이자수입	14,439	39,251	31,656	17,217	△7,595	119.2	△19.3
기타이자수입	14,439	39,251	31,656	17,217	△7,595	119.2	△19.3
임시적세외수입	220,341	408,213	231,426	11,085	△176,787	5.0	△43.3
보조금반환수입	220,341	408,213	231,426	11,085	△176,787	5.0	△43.3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8,760	137,796	49,101	△29,659	△88,695	△37.7	△64.4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41,581	270,417	182,325	40,744	△88,092	28.8	△32.6

## 2. 세출예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세출예산은 284억 4천 7백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48억 6천 3백만원 대비 14.4% 증액된 수준이며, 2025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58억 4천 6백만원 대비 10.1%가 증액된 수준임.

### 〈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4,863,014	25,845,514	28,447,025	3,584,011	2,601,511	14.4	10.1
소 계	24,863,014	25,845,514	28,447,025	3,584,011	2,601,511	14.4	10.1
행정 관리							
행정운영경비	269,971	269,971	254,386	△15,585	△15,585	△5.8	△5.8
재무활동	0	0	0	0	0	-	-
사업비	24,593,043	25,575,543	28,192,639	3,599,596	2,617,096	14.6	10.2
교 부 금	0	0	0	0	0	-	-

- 2026년도 정책 · 단위 · 세부사업별 2025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5년도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24,863,014	25,845,514	28,447,025	3,584,011	2,601,511	14.4	10.1
자치경찰운영과	2,510,241	3,922,741	5,041,306	2,531,065	1,118,565	100.8	28.5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 마련	2,326,201	3,738,701	4,866,969	2,540,768	1,128,268	109.2	30.2
자치경찰 제도 정비	269,001	269,001	218,219	△50,782	△50,782	△18.9	△18.9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107,000	107,000	78,300	△28,700	△28,700	△26.8	△26.8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62,001	162,001	139,919	△22,082	△22,082	△13.6	△13.6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5년도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057,200	3,469,700	4,648,750	2,591,550	1,179,050	126.0	34.0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2,005,000	3,417,500	4,630,000	2,625,000	1,212,500	130.9	35.5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52,200	52,200	18,750	△33,450	△33,450	△64.1	△64.1
행정운영경비	184,040	184,040	174,337	△9,703	△9,703	△5.3	△5.3
기본경비	184,040	184,040	174,337	△9,703	△9,703	△5.3	△5.3
기본경비	184,040	184,040	174,337	△9,703	△9,703	△5.3	△5.3
자치경찰협력과	18,571,085	18,141,085	18,147,145	△423,940	6,060	△2.3	0.0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18,524,089	18,094,089	18,104,242	△419,847	10,153	△2.3	0.1
시-경찰 협력 강화	43,520	43,520	42,952	△568	△568	△1.3	△1.3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43,520	43,520	42,952	△568	△568	△1.3	△1.3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18,480,569	18,050,569	18,061,290	△419,279	10,721	△2.3	0.1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	2,000	2,000	19,506	17,506	17,506	875.3	875.3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200,631	200,631	89,915	△110,716	△110,716	△55.2	△55.2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381,476	1,381,476	865,003	△516,473	△516,473	△37.4	△37.4
재해재난 긴급구조 장비 등 지원	66,060	66,060	46,269	△19,791	△19,791	△30.0	△30.0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전환사업)	30,953	30,953	16,829	△14,124	△14,124	△45.6	△45.6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9,700	99,700	47,274	△52,426	△52,426	△52.6	△52.6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전환사업)	68,087	68,087	29,456	△38,631	△38,631	△56.7	△56.7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140,916	140,916	120,461	△20,455	△20,455	△14.5	△14.5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80,237	80,237	61,750	△18,487	△18,487	△23.0	△23.0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842,541	842,541	761,204	△81,337	△81,337	△9.7	△9.7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581,419	581,419	426,214	△155,205	△155,205	△26.7	△26.7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 팀 운영(전환사업)	44,630	44,630	44,630	0	0	0.0	0.0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38,950	38,950	37,870	△1,080	△1,080	△2.8	△2.8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5년도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 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 사업)	7,983	7,983	4,728	△3,255	△3,255	△40.8	△40.8
	7,080,521	7,080,521	7,088,707	8,186	8,186	0.1	0.1
	201,500	201,500	202,076	576	576	0.3	0.3
	100,083	100,083	126,384	26,301	26,301	26.3	26.3
	48,700	48,700	48,700	0	0	0.0	0.0
	842,676	842,676	627,877	△214,799	△214,799	△25.5	△25.5
	1,616,000	1,186,000	1,483,000	△133,000	297,000	△8.2	25.0
	2,003,427	2,003,427	2,196,022	192,595	192,595	9.6	9.6
	2,674,252	2,674,252	3,194,327	520,075	520,075	19.4	19.4
	45,696	45,696	39,200	△6,496	△6,496	△14.2	△14.2
	206,331	206,331	206,331	0	0	0.0	0.0
	55,800	55,800	94,680	38,880	38,880	69.7	69.7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	100.0	100.0
	0	0	9,627	9,627	9,627	-	신규사업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 해결사업	0	0	133,250	133,250	133,250	-	신규사업
행정운영경비	46,996	46,996	42,903	△4,093	△4,093	△8.7	△8.7
기본경비	46,996	46,996	42,903	△4,093	△4,093	△8.7	△8.7
기본경비	46,996	46,996	42,903	△4,093	△4,093	△8.7	△8.7
자치경찰사업지원과	3,781,688	3,781,688	5,258,574	1,476,886	1,476,886	39.1	39.1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3,742,753	3,742,753	5,221,428	1,478,675	1,478,675	39.5	39.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1,960,704	1,960,704	761,660	△1,199,044	△1,199,044	△61.2	△61.2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 정책	325,206	325,206	281,138	△44,068	△44,068	△13.6	△13.6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100,000	100,000	88,200	△11,800	△11,800	△11.8	△11.8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053,051	1,053,051	169,874	△883,177	△883,177	△83.9	△83.9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5년도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482,447	482,447	222,448	△259,999	△259,999	△53.9	△53.9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1,782,049	1,782,049	4,459,768	2,677,719	2,677,719	150.3	150.3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	437,959	437,959	3,097,711	2,659,752	2,659,752	607.3	607.3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이전·신축	0	0	77,394	77,394	77,394	-	신규사업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700,000	700,000	650,000	△50,000	△50,000	△7.1	△7.1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400,917	400,917	397,390	△3,527	△3,527	△0.9	△0.9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지하철경찰대)(전환사업)	182,813	182,813	176,913	△5,900	△5,900	△3.2	△3.2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60,360	60,360	60,360	0	0	0.0	0.0
행정운영경비	38,935	38,935	37,146	△1,789	△1,789	△4.6	△4.6
기본경비	38,935	38,935	37,146	△1,789	△1,789	△4.6	△4.6
기본경비	38,935	38,935	37,146	△1,789	△1,789	△4.6	△4.6

## II. 검토의견

### 1. 세입예산 검토

-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최종(4억 4천 7백만원) 예산 대비 41.2% 감액한 2억 6천 3백만원이며, 모두 세외수입(2억 6천 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입예산을 감액한 주요사유는 ① 2024년 대비 감액 편성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감소, ② ‘치안협력단체 및 아동지킴이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감소, ③ 치안협력단체 및 아동안전지키미 사업 보조금 이자발생 감소에 따른 것임.

#### 〈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세입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234,780	447,464	263,082	28,302	△184,382	12.1	△41.2
세외수입	234,780	447,464	263,082	28,302	△184,382	12.1	△41.2
경상적세외수입	14,439	39,251	31,656	17,217	△7,595	119.2	△19.3
이자수입	14,439	39,251	31,656	17,217	△7,595	119.2	△19.3
기타이자수입	14,439	39,251	31,656	17,217	△7,595	119.2	△19.3
임시적세외수입	220,341	408,213	231,426	11,085	△176,787	5.0	△43.3
보조금반환수입	220,341	408,213	231,426	11,085	△176,787	5.0	△43.3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8,760	137,796	49,101	△29,659	△88,695	△37.7	△64.4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41,581	270,417	182,325	40,744	△88,092	28.8	△32.6

## 가) 경상적 세외수입

-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3천2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2억 3천 1백만원)’ 등 총 2억 6천 3백만원으로 전년(4억 4천 7백만원) 대비 41.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치안협력단체 및 자치구 보조금”과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의 정산 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전년(3천 9백만원) 대비 19.3% 감액한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치안협력단체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기타이자수입) 2026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6년 추계액 : 13,965천 원
- 산출내역 :
  - '25년 자치구 교부금액 861,945천원 × 1.55%(전년도 이자 발생비율) = 13,360천원
  - '25년 자율방범연합회 교부금액 140,786천원 × 0.43%(최근3개년 평균 이자 발생비율) = 605천원

### ◆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이자반납 수입(기타이자수입) 2026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6년 추계액: 17,691천 원
- 산출내역: '25년 예산현액 7,076,507천원 × 0.25%('22년 0.30%, '23년 0.18%, '24년 0.28% 이자액 비율 평균) = 17,691천 원

- 다만, ‘기타이자수입’은 매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기타이자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2023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70	43	20,479	15,714	39,251	19,837	39,251	31,656

\* 2022년에는 협력단체 중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보조금만 시비로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이 2023년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모두 서울시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기타이자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는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 예산에 대한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의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4천 9백만원)’, ‘자체보조금 등반환수입(1억 8천 2백만원)’ 등으로 전년(4억 8백만원) 대비 43.3% 감액한 2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세입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임시적세외수입	220,341	408,213	231,426	11,085	△176,787	5.0	△43.3
보조금반환수입	220,341	408,213	231,426	11,085	△176,787	5.0	△43.3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8,760	137,796	49,101	△29,659	△88,695	△37.7	△64.4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41,581	270,417	182,325	40,744	△88,092	28.8	△32.6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자율방범대 근무복(하복 및 방한복)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 집행잔액 반납(4천 9백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 ◆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026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6년 추계액: 49,101천원
- 산출내역 : ①(‘25년 실매칭금액 x 전년도 실집행잔액비율) + ② 미매칭금액
  - ① ‘25년 실매칭 금액 839,715천원 x3.2%(전년도 실집행잔액 비율) = 26,871천원
  - ② ‘25년 미매칭금액 22,230천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치안협력단체 지원 보조금”과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의 정산 후 집행잔액으로 전년(2억 7천만원) 대비 32.6% 감액한 1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치안협력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6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6년 추계액: 6,120천원
  - 산출내역 :
    - 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0\text{천원} \times 6.1\%(\text{최근 3개년 집행잔액 비율 평균}) = 6,100\text{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40,786\text{천원} \times 0.05\%(\text{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 20\text{천원}$
- ◆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6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6년 추계액: 176,205천원
  - 산출내역: ’25년 예산현액 7,076,507천원  $\times 2.49\%(\text{’22년 2.25\%, ’23년 1.48\%, ’24년 3.75\% 집행잔액 비율 평균}) = 176,205\text{천원}$

- 다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2023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2,700	2,624	159,440*	112,093	270,417	262,689	270,417	182,325

\* 2022년에는 협력단체 중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보조금만 시비로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이 2023년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모두 서울시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음.

## 2. 세출예산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세출예산은 284억 4천 7백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248억 6천 3백만원) 대비 14.4% 증액된 수준이며, 2025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258억 4천 6백만원) 대비 10.1%가 증액된 수준임.

### 〈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4,863,014	25,845,514	28,447,025	3,584,011	2,601,511	14.4	10.1
소 계	24,863,014	25,845,514	28,447,025	3,584,011	2,601,511	14.4	10.1
행정운영경비	269,971	269,971	254,386	△15,585	△15,585	△5.8	△5.8
재무활동	0	0	0	0	0	-	-
사업비	24,593,043	25,575,543	28,192,639	3,599,596	2,617,096	14.6	10.2
교 부 금	0	0	0	0	0	-	-

#### 가)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

-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284억 4천 6백만원) 중 사업비 예산은 281억 9천 2백만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255억 7천 5백만원) 대비 10.2%(26억 2천만원) 증액한 수준임.
-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비 예산 중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사업(16개) 예산은 전년(54억 9천만원) 대비 72.1% 증액한 94억 5천만원이며, 전환사업(27개) 예산은 전년(200억 9천만원) 대비 6.7% 감액한 187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사업 및 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25년 최종예산	2026년 예산(안)	2025년대비증감	증감률(%)
사업비	25,575,543	28,192,639	2,617,096	10.2
자체사업(16개)	5,489,246	9,447,696	3,958,450	72.1
전환사업(27개)	20,086,297	18,744,943	△1,341,354	△6.7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예산 중 2026년 신규사업은 “기초질서 확립 및 보호조치 활성화” 사업에 1천만원,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사업에 1억 3천 3백만원,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이전·신축” 사업에 7천 7백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신규사업 현황 : 3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6년도(안)	편성 사유
1 (156p)	기초질서 확립 및 보호조치 활성화	9,627	주취자응급의료센터 및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의 사무 운영비 등 신규 예산 편성
2 (159p)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133,250	서울시 맞춤형 과학 치안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분석 활용 실종아동 수색 및 CPTED 사업 지원 플랫폼 개발 ※ 지역 치안문제해결 R&D 지원사업(경찰청) 공모 선정에 따라 매칭 시비 편성
3 (191p)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이전신축	77,394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이전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지반 조사 용역비 및 설계공모 진행을 위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설계공모 당선자 공모보상비 신규 편성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 이상 증액 사업(당초예산 기준)은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26억 2천 5백만원, 130.9% 증액)”,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1천 7백만원, 875.3% 증액)”,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사업(26억 6천만원, 607% 증액)” 등 6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증액사업 현황(20% 이상) : 6개 사업 〉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안)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30p)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2,005,000	4,630,000	2,625,000	1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에 대해 인당 25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li> <li>※ 자치경찰 대상 지급 복지포인트의 50% 수준</li> </ul>
2 (45p)	안심동행 서울 자치 경찰 시책 공모	2,000	19,506	17,506	87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책 공모에 선정된 최종 1개 사업(관계성 범죄 대상자 심리극 솔루션) 사업비 반영</li> </ul>
3 (116p)	교통장비, 운영비 (전환사업)	100,083	126,384	26,301	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외근경찰 일부(1,357명/5)에 방한형광점퍼 등 피복·장비 순차적 지급</li> <li>- 교통전담기동대 인원 증가(50명→77명)에 따른 안전조끼 구매 등 예산 증액</li> </ul>
4 (150p)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 터 개선	55,800	94,680	38,880	6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부지 소재 노후 교통센터(동작) 환경개선 (시설비)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li> </ul>
5 (153p)	다중운집행사 교통 안전활동 현장 대응 력 제고	20,000	40,000	20,00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운집행사 수요 증가에 따른 회의 필요물품, 긴급행사 지원 등 예산 증액</li> </ul>
6 (186p)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 이전·신축사업	437,959	3,097,711	2,659,752	60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 용역 완료 후 추진 일정에 따라 '26.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발주 및 공사 실시에 따른 착수 공사비(30%) 등 반영</li> </ul>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 이상 감액 사업(당초예산 기준)은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5억1천6백만원, 37.4% 감액)”,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8억8천3백만원, 83.9% 감액)”, “협력단체 지원(2억6천만원, 53.9% 감액)” 등 14개 사업으로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감액사업 현황(20% 이상) : 14개 사업 〉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안)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19p)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107,000	78,300	△28,700	△26.8	- 온라인 홍보강화에 따른 오프라인 홍보물 및 홍보영상 예산 감액
2 (34p)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52,200	18,750	△33,450	△64.1	-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대학 운영비 및 인권보호 자문회의 운영비 감액
3 (49p)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전환사업)	200,631	89,915	△110,716	△55.2	- 단년도 사업인 범죄예방 교실 운영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미편성 - 공동현관 프리패스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미편성
4 (53p)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381,476	865,003	△516,473	△37.4	- 범죄예방인프라 사업대 상지 개소수 조정
5 (57p)	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등 지원	66,060	46,269	△19,791	△30.0	- '25년 순찰차 739대 재해·재난장비 긴급 구조 장비 구매 완료 - 방염장갑, 전류검측기 등 구입 품목 변경하여 예산 감액
6 (60p)	불법품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전환사업)	30,953	16,829	△14,124	△45.6	- '25년 피의자 도주 및 추락 방지용 방범망 설치 완료에 따른 예산 미편성 - 풍속사범단속물품 구입 품목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안)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7 (65p)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9,700	47,274	△52,426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사건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전문가 참여수당 예산 타 사업으로 이동하여 편성</li> <li>- 교제폭력 인식개선 영상 제작 완료하여 '26년 예산 미편성</li> </ul>
8 (70p)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전환사업)	68,087	29,456	△38,631	△5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판 교체 대상 개소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li> </ul>
9 (79p)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80,237	61,750	△18,487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합동점검 교육·홍보 자료 제작비 타부서 예산 중복으로 미편성</li> </ul>
10 (91p)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581,419	426,214	△155,205	△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행안부 특교세에 매칭사업 종료에 따른 시비 예산 미편성 (청소년 경찰학교 개선)</li> </ul>
11 (104p)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성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7,983	4,728	△3,255	△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촬영카메라 신규장비 구입대수 변경(9대→3대)</li> </ul>
12 (123p)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842,676	627,877	△214,799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교통외근경찰관 계절용품(발열조끼) 지급 완료에 따라 계절용품 구매 예산 미편성</li> <li>- '25년 드론 구매 완료로 예산 미편성</li> </ul>
13 (176p)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053,051	169,874	△883,177	△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24~'25년, 2개년) 종료</li> <li>- '25년 제작한 자율방범대 교육영상 활용에 따른 교육자료 제작 예산 감액</li> <li>- 급량비(야식비) 단가 반영 등</li> </ul>
14 (182p)	협력단체 지원 (전환사업)	482,447	222,448	△259,999	△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범운전자회 지원품목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 및 감소 인원 반영</li> <li>- 녹색어머니회 회원수 감소 추세 및 초등학교 안전 관련 일자리 확대로 피복비 감액</li> </ul>

## 나)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보장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중 전환사업 예산은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자치경찰사무로,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는 2022년 국고보조금(152억원)보다 18억원 감액한 134억원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할 예정임.<sup>1)</sup>
  - 하지만, 서울시의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평균 64억 4천만원을 의무 대비 초과 편성했고, 2026년도 187억 4천만원으로 의무편성 규모보다 56억 4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라고 하겠음.

###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국고보조금	2023년 최종예산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최종예산	2026년 예산(안)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15,190,909	17,237,097	22,110,420	20,158,297	18,744,943
의무편성 134억원 기준대비 초과편성액	-	3,837,097	8,710,420	6,758,297	5,644,943

1)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8호)에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 (~ '26년)"이라고 하고 있음.

## 〈 2026년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명	2025년 예산최종	2026년 예산안	2025년 대비증감	증감률(%)
1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053,051	169,874	Δ883,177	Δ83.9
2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482,447	222,448	Δ259,999	Δ53.9
3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200,631	107,631	Δ8,446	Δ7.3
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453,476	865,003	Δ588,473	Δ40.5
5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전환사업)	30,953	16,829	Δ14,126	Δ45.6
6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9,700	47,274	Δ52,426	Δ52.6
7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전환사업)	68,087	29,456	Δ38,631	Δ56.7
8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140,916	120,461	Δ20,455	Δ14.5
9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80,237	61,750	Δ18,487	Δ23.0
10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842,541	761,204	Δ81,337	Δ9.7
11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581,419	426,214	Δ155,205	Δ26.7
12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44,630	44,630	0	0.0
13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38,950	37,870	Δ1,080	Δ2.8
14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전환사업)	7,983	4,728	Δ3,255	Δ40.8
15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7,080,521	7,088,707	8,186	0.1
16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01,500	202,076	576	0.3
17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100,083	126,384	26,301	26.3
18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전환사업)	48,700	48,700	0	0.0
19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842,676	627,877	Δ214,799	Δ25.5
20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1,186,000	1,483,000	297,000	25.0
21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2,003,427	2,196,022	192,595	9.6
22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2,674,252	3,194,327	520,075	19.4

구분	사업명	2025년 예산최종	2026년 예산안	2025년 대비증감	증감률(%)
23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45,696	39,200	△6,496	△14.2
24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206,331	206,331	0	0.0
25	방범용CCTV운영(전환사업)(사업종료)	-	-	-	-
26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400,917	397,390	△3,527	△0.9
27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 활동(지하철경찰대)(전환사업)	182,813	176,913	△5,900	△3.2
28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60,360	60,360	0	0.0
29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폐지)	-	-	-	-
계		20,158,297	18,744,943	△1,413,354	△8.0

- 또한,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서울시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보전금 134억원)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이후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인 주민 중심의 치안 및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직·인사에 대해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부담하도록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적극적·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 나아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자치경찰사무 관련 교통 범칙금, 유실물 매각금 등 지방 이양, 소방특별회계와 같은 자치경찰특별 회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 등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이고, 현재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재정 및 시·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법」이 있음. 따라서, 자치경찰도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균등한 지역 치안 행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다) 기초질서 확립 및 보호조치 활성화(신규)

- 동 사업은 응급구호 대상자 보호조치 운영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 “기초질서 확립 및 보호조치 활성화”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9,627	9,627	-
사무관리비	0	0	9,627	9,627	신규사업

### 〈 “기초질서 확립 및 보호조치 활성화”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취자응급의료센터 등 운영지원 = 9,627천원</li> <li>- 보건용 마스크 120원*36명*30개*12개월 = 1,556천원</li> <li>- 손소독제 구매 3,800원*7개소*2개*12개월 = 639천원</li> <li>- 당직 침구류 구매 101,600원*7개소 = 712천원</li> <li>- 당직 침구류 세탁비 25,000원*7개소*2회*12개월 = 4,200천원</li> <li>- 사무용품 등 비품 구매비 30,000원*7개소*12개월 = 2,520천원</li> </ul> <p>증감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취자·고위험정신질환자 등 신속한 위기대응이 필요한 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의 위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 및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의 사무 운영비 등 신규 예산 편성</li> </ul>

- 동 사업은 보호조치 관련 현장의 치안 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로 보호조치 통합지원센터 개소\* 등 대응체계 개선·운영 중이나,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자치경찰사무(보호조치) 수행의 실효성 확보 필요에 의해 신규 편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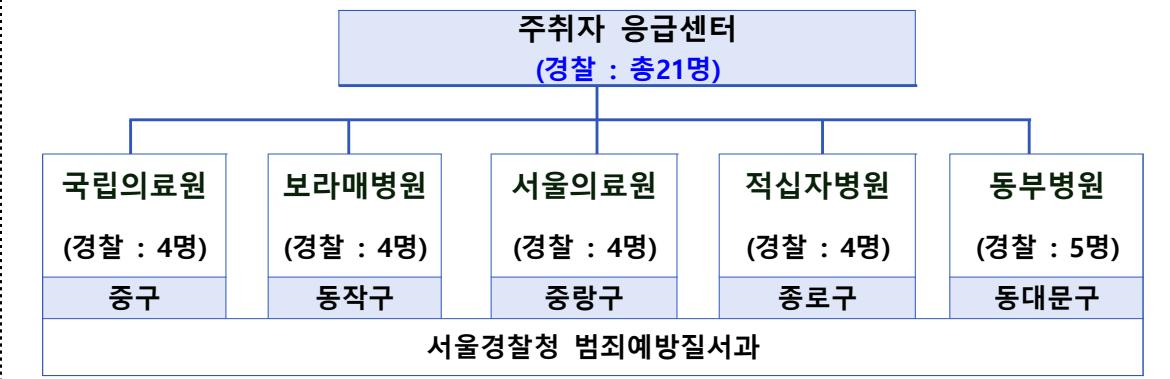
\* 시립동부병원 내 주치자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경찰대응팀 운영('25.4.~)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요

- ✓ 위치 : 마포구 성산동 소재(舊 관광경찰대 4층)
- ✓ 목적 : 정신질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초기대응 및 적시치료 기회 제공
- ✓ 형태 : 경찰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정신응급개입팀 운영
- ✓ 운영 : 서울시(정신건강과) +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요

####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5개소) >



- 센터별 경찰관 상주(5개소 21명) / 5조 3교대 및 4조 2교대 근무
- 임무 : 보호조치 대상자 의료진 인계, 센터 내 소란·난동·폭행 등 제지

- 이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으로 현장 경찰관 사기를 증진하고,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신속한 응급구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 2026년 예산 편성이 승인되면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될 것이므로 예산 편성의 규모(1천만원)가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라)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신규)

- 동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 주관의 「학교주변 이상상황 식별 및 CPTED 지원 플랫폼 개발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억 6천 6백만원의 시비 분담 의무가 발생하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 사업 개요 >

- ▶ 추진기관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협력)

\* 동국대 융합안전학술원 + 이노뎁(지능형CCTV) + 세명소프트(AI) + (주)타임게이트

- ▶ 협력내용 : 2차년도부터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지방비 매칭, 공공데이터 제공 협조 등

- ▶ 기간 : '25년~'27년(3년)

- ▶ 예산 : 총 17억 3,250만원(국비 14억 6천6백만원, 시비 2억 6,650만원)

구분	국비	시비
'25년	400,000,000원	해당없음
'26년	533,000,000원	133,250,000원
'27년	533,000,000원	133,250,000원
계	1,466,000,000원	266,500,000원

- ▶ 주요 내용

- ① (실종아동 수색) AI 기술 활용, 실종상황 발생 시 CCTV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 탐지  
② (CPTED) 서울 시내 공간정보, 범죄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133,250	133,250	-
민간경상사업보조	0	0	133,250	133,250	신규사업

###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p>○ 경찰청 지역 치안문제해결 R&amp;D사업 지원 133,250,000원 = 133,250천원</p>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사유	
	○ 경찰청 지역 치안문제해결 R&D 지원사업, 국비 25% 매칭 시비 편성	

- 이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 치안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 또는 실종아동 수색, 범죄 예방 등 향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촉진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의 사전 동의 및 지원근거 없이 재정적 부담을 약속하고, 사후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도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고, 반드시 조례에 직접적인 지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규율하는 조례에는 이러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지원을 확약한 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의 선후 관계에 따라 의회 재정 통제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즉 장래에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 행정기관 간 견제(재정통제권등)와 균형 위한 제도적 장치임.
- ※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 · 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 (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중략)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2월 21일 및 4월 11일에 동국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2차년도부터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지방비 매칭"을 약속하는 지원확약서를 서울특별시장 직인을 날인하여 전달하였는바, 이는 장래의 예산 지출을 약속하는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 이후 동 사업이 최종 선정되고, 실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2025년 7월 경부터 조례 개정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재정적 부담을 약속하고, 예산 편성 후 기정사실화된 사업을 근거로 사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사례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사업 참여 경위 >

- ▶ ('25.1.24.) 경찰청, '2025년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신규과제 선정 계획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25-12호)
- ▶ (2.17.) 동국대 이○○ 교수, '협력요청서' 자치경찰위원회 제출
- ▶ (2.24.) 자치경찰위원회 지원확약서 작성·전달 / 동국대 산학협력단 공모 신청

#### <지원확약서 주요 협력 내용>

- ① 2차년도부터 정부출연금 25% 이상 지방비 매칭
-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협조
- ③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기 회의 및 협의체 운영 협조
- ④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 ▶ (4.03.) 경찰청 사업 선정계획 재공고(4.03.~4.14.)
  - \* 재공고 사유 : 2개 과제를 선정해야 하나 최초 심사결과 기준(평점 70점)이상 사업이 1개로써 추가 과제 선정을 위해 2차 공모 진행
- ▶ (4.11.) 지원확약서 재작성 동국대 산학협력단 전달 / (4.14.) 동국대 재공모 신청
- ▶ (5.09.) 경찰청, 최종 선정사업 발표(선정지역 : 서울, 전북)

## 마)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이전·신축(신규)

- 동 사업은 한강경찰대 난지센터의 건물 노후화, 한강 상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 이전·신축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망원센터(한강 망원 공원내)를 난지(한강 난지공원내, 상암동 499-29)로 이전·신축(지상 2층)하기 위한 '시설비' 등으로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이전·신축”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77,394	77,394	-
사무관리비	0	0	5,000	5,000	신규사업
시설비	0	0	72,394	72,394	신규사업

### 〈 한강경찰대 조직·인력 〉

- 1대장(경정), 5팀(행정팀, 수상안전 4개팀) / 근무자 52명

구 분	망원본대	이촌센터	뚝섬센터	광나루센터
발족	2005	1992	2009	1992
소재지	마포구 망원동	용산구 이촌동	광진구 자양동	강동구 천호동
관할구역	행주 ~ 마포대교 (15.3km)	마포 ~ 한남대교 (8.3km)	한남 ~ 잠실대교 (7.9km)	잠실 ~ 강동대교 (10.0km)

※ 한강경찰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8조, 제35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사무로, 한강경찰대는 한강 41.5km 인명구조, 수색활동, 범죄예방·단속활동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 한강의 치안력을 대폭 확충하고자 한강경찰대 대원이 39명에서 52명으로 총 13명이 증원되었음.

○ 치안센터 4개소 : 망원(본대), 이촌, 뚝섬, 광나루 / 순찰정 9정

	<b>망원(본대)</b> (마포 ~ 행주) 순찰정 3척	
	<b>이촌</b> (한남 ~ 마포) 순찰정 2척	
<b>뚝섬</b> (잠실 ~ 한남) 순찰정 2척		
<b>광나루</b> (강동 ~ 잠실) 순찰정 2척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329면 재인용.

- 본 사업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바,  
동 안전의 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동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으로 지방자치와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는 서울경찰청 지휘·감독 및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년(1억 6천 2백만원) 대비 13.6% 감액한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62,001	162,001	139,919	△22,082	△13.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401	24,401	25,109	709	2.9
사무관리비	78,000	78,000	55,210	△22,790	△29.2
공공운영비	8,000	8,000	8,000	0	0.0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20,000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0	0.0
특정업무경비	21,600	21,600	21,600	0	0.0

- 동 사업 중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사무관리비)’의 감액은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집행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6년 예산 편성안	39,000	-	-	-
2025년 10월	50,700	30,570	20,130	39.70
2024	61,500	53,920	7,580	12.33
2023	200,000	57,370	142,630	71.31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사무관리비)’는 전년(340만원) 대비 50%(170만원)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으로 보이며,
  - 불용 예산의 축소로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필요하나, 인사·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여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6년 예산 편성안	1,700	-	-	-
2025년 10월	3,400	800	2,600	76.5
2024년	3,400	500	2,900	85.3
2023년	3,400	1,800	1,600	47.1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1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사)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동 사업은 민·경 협력치안으로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10억 5천 3백만원) 대비 83.9% 감액한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053,051	1,053,051	169,874	△883,177	△83.9
사무관리비	14,000	14,000	2,800	△11,200	△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5,000	△5,000	△50.0
자율방범대실비지원	126,320	126,320	120,740	△5,580	△4.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0,786	40,786	41,334	548	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1,945	861,945	0	△861,945	△100.0

- 동 사업 ‘사무관리비’는 자율방범대 교육자료는 2025년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예정으로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고, 우수 자율방범대·대원 인증패 제작비를 표준상패 기준단가 반영하여 전년(1천4백만원) 대비 80.0% 감액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에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새로운 교육 내용 반영 미흡으로 학습자 교육 효과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바, 필수교육 내용과 “신규·추가” 내용 등을 구분하여 교육효과 유지·개선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동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율방범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시가 자율방범대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바, 순찰효과의 극대화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를 자치구 예산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2025년 2개년 사업이 종료되어 2026년 예산은 미편성함.

- 관련 법령(「자율방범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경찰청장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으며, 서울시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복장·장비를 지원함에도 「자율방범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산만 지원하고 실제로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 ②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 자율방범대·연합대·연합회 지원근거 현황 〉

구 분	자율방범대	자율방법연합대	자율방법연합회
조직 및 구성	읍·면·동 단위 1개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 고려해 2개 이상 둘 수 있음	시·군·구 단위 1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1개
신 고	경찰서장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피출소장은 자율방범대원 활동 지도·감독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비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li> <li>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li> <li>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지사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li> <li>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li> </ul>
경비의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li> <li>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설치비(시설 임차 경우 그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li> <li>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선도비</li> <li>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li> <li>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임차 경우 그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li> <li>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li> <li>그 밖에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합회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li> <li>연합회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임차 경우 그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li> <li>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li> <li>그 밖에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li> </ul>

## 아)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 동 사업은 교통협력단체 지원을 통해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전년(4억 8천 2백만원) 대비 53.9% 감액한 2억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482,447	482,447	222,448	△259,999	△53.9
사무관리비	482,447	482,447	222,448	△259,999	△53.9

- 이는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의3,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제4조) 따라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역량강화 및 근무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각 학교의 등·하교 시간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교통협력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현황('25.9월 기준) 〉

단체명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의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년도	'98년 9월	'06년 2월
구성·인원	31개서, 4,334명	15개서 73초교, 19,560명
주요활동	러쉬아워, 주요행사 교통 보조 및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사업수행주체	서울청	서울청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476면 재인용.

- 최근 자치구 등에서 지원하는 등굣길 안전지원단(또는 교통안전지도사) 증가로 녹색어머니회 인원 감소('24년 15개 35,706명 → '25년 15개서 19,560명), 모범운전자회 동·하절기 피복 지급이 완료되어 우의, 어깨 경광등, 경광봉 등 안전용품 중심의 지원품목 변경 및 단가 반영으로 예산 감액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교통협력단체 교육 및 간담회 등 행사 = 29,350천원	○ 교통협력단체 교육 및 간담회 등 행사 = 19,200천원
	- 교육자료 제작 3,000원*3,650명 = 10,950천원	
	- 모범운전자회 행사 진행 물품 200,000원*31개서*2회 = 12,400천원	- 모범운전자회 행사 진행 물품 200,000원*32개서*2회 = 12,800천원
	- 녹색어머니회 행사 진행 물품	- 녹색어머니회 행사 진행 물품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p>200,000원*15개서*2회 = 6,000천원</p> <p>○ 교통협력단체 안전용품 및 복제 지원 = 453,097천원</p> <p>- 모범운전자회 피복 및 안전용품 지원 = 383,122천원</p> <p>▷ 모범운전자회 동계점퍼 145,000원*1,800벌 = 261,000천원</p> <p>▷ 모범운전자회 동계장갑 21,000원*4,697켤레 = 98,637천원</p> <p>▷ 모범운전자 핫팩 500원*10개*4,697명 = 23,485천원</p> <p>- 녹색어머니회 피복 및 안전용품 지원 = 69,975천원</p> <p>▷ 하계 정복 73,000원*15개서*45벌 = 49,275천원</p> <p>▷ 균무 와이셔츠 26,000원*15개서*45벌 = 17,550천원</p> <p>▷ 어깨경광등 21,000원*15개서*10개 = 3,150천원</p>	<p>200,000원*16개서*2회 = 6,400천원</p> <p>○ 교통협력단체 안전용품 및 복제 지원 = 203,248천원</p> <p>- 모범운전자회 피복 및 안전용품 등 지원 = 187,648천원</p> <p>▷ 모범운전자회 우의 59,000원*2,150벌 = 126,850천원</p> <p>▷ 모범운전자 어깨경광등 13,000원*4,300개 = 55,900천원</p> <p>▷ 모범운전자 경광봉 15,800원*31개서*10개 = 4,898천원</p> <p>- 녹색어머니회 피복 및 안전용품 등 지원 = 15,600천원</p> <p>▷ 녹색어머니회 기타물품 200,000원*78개교 = 15,600천원</p>
	<b>증감사유</b>	
	<p>○ 모범운전자회 수요에 따른 지원품목 변경 및 단가 반영으로 감액</p> <p>○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 감소 등에 따른 지원예산 감액</p>	

- 다만, ‘교통협력단체 교육 및 간담회 등 행사’에서 행사물품 예산만 반영하고 교육자료 제작비는 전액 미반영하여 교육 없이 간담회만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동 사업은 범죄 취약지 등에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13억 8천 1백만원) 대비 37.4% 감액한 8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381,476	1,381,476	865,003	△516,473	△37.4
사무관리비	368,476	368,476	365,003	△473	△0.1
시설비	1,016,000	1,016,000	500,000	△516,000	△50.8

- 동 사업의 ‘시설비’ 예산 감액은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대상지 축소(공모 3개소→2개소, 비공모 2개소→0개소), 2025년 신규 사업인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 설치 사업 종료, 31개 경찰서별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 미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중 ‘시설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공모) 250,000,000원*3개소 = 750,000천원</li> <li>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비공모) = 2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대문구(창천동) 100,000,000원 = 100,000천원</li> <li>서대문구(홍제동) 100,000,000원 = 100,000천원</li> </ul> </li> <li>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612,900원*31개서 = 50,000천원</li> <li>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 500,000,000원 = 500,000천원</li> </ul>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16,000,000원 = 16,000천원	
	증감사유	
	○ 사업대상지 개소수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	

- 서울시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으나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대상지를 축소하고, 31개 경찰서별로 맞춤형 범죄예방물 설치 예산마저 전액 미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최근 5년간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2020년~2024년) 〉

(단위: 건, 명)

연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24	149	137	87	85	5,523	5,183	35,506	22,796	39,554	35,074
2023	150	144	129	117	5,764	5,395	37,038	21,600	43,132	37,567
2022	104	98	117	112	5,816	5,344	37,579	20,205	46,783	39,338
2021	124	112	122	116	4,911	4,446	33,531	17,950	41,757	35,388
2020	141	126	138	132	5,763	5,458	38,293	19,705	48,344	41,127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 2025년 11월 18일 최종방문).

- 다음으로, 동 사업에서 2025년 신규로 편성한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 설치’ 예산을 2026년에는 전액 미편성하고 있음.
  - 2025년 예산 편성된 동 사업은 2025년 4월 한강공원 내 3개소(잠실, 뚝섬, 강서공원) 설치 후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 실시 중(12월 결과보고 예정)으로 성과 검증, 정책적 타당성 판단 및 확대·중지에 대한 의사결정 없이 예산의 미편성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일회성 예산”으로 그친 원인 파악과 함께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효과성있는 사업의 발굴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차)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 동 사업은 경찰, 교사 등 익숙한 전문 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실종, 학대 등) 및 청소년 선도활동 보조 등 아동·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70억 8천만원)과 유사한 70억 8천 8백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7,080,521	7,080,521	7,088,707	8,186	0.1
사무관리비	4,014	4,014	27,840	23,826	593.6
민간경상사업보조	7,076,507	7,076,507	7,060,867	△15,640	△0.2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 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서울특별시경찰청 예규 제1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동안전지킴이”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속)**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경찰서장이 위촉하며, 지구대(팀)장 또는 파출소장 소속 하에 활동한다.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중 ‘사무관리비’ 증액은 각 경찰서 단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킴이 선발 부대비용을 당초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관한 것임.
-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아동안전지킴이’ 현황(‘25.9월 기준) 〉

(단위 : 명)

자치구	지킴이	자치구	지킴이	자치구	지킴이	자치구	지킴이
중구	28	영등포구	51	중랑구	48	양천구	64
종로구	30	성동구	44	강남구	75	송파구	87
서대문구	42	동작구	44	관악구	49	노원구	89
용산구	32	광진구	46	강서구	75	도봉구	51
성북구	63	은평구	66	강동구	63		
동대문구	44	강북구	32	구로구	57	계	1,323
마포구	49	금천구	41	서초구	53		

※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725면 재인용.

- 다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의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난 3년 연속 예산편성액 대비 과도한 규모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22년 1억4천4백만원, ’23년 1억원, ’24년 2억6천3백만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안전지킴이의 민간보조 사업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및 사업추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2026년 예산 편성 시 3개년 평균 불용률(2.5%)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최근 아동 납치 사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지킴이 추가 증원 검토 등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음.

〈 2022년 ~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 천원)

연도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2022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428,067	6,283,435	144,632	0	0	144,632
2023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797,309	6,696,810	100,498	0	0	100,498
2024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7,006,020	6,743,331	262,689	0	0	262,689

〈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10월 말)	집행잔액 (10월 말)	불용예상액	예상 불용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전환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076,507	7,076,507	0	0	0.0

## 카)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 동 사업은 교통경찰관의 외근활동 시 필요 물품 및 예산 지원, 국제운전면허증의 원활한 발급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8억 4천 3백만원) 대비 25.5% 감액한 6억 2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842,676	842,676	627,877	△214,799	△25.5
사무관리비	779,076	779,076	612,477	△166,599	△21.4
공공운영비	900	900	10,000	9,100	1,011.1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700	62,700	5,400	△57,300	△91.4

- 동 사업 중 ‘교통외근경찰 계절 용품 지원(사무관리비)’을 위하여 2025년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발열조끼를 지급했으나, 2026년 예산 편성에 전액 미반영하고 있어 교통외근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효과, 재정 투입 규모의 적정성, 계속 추진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교통외근 활동 지원(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외근 활동 지원 = 365,898천원</li> <li>- 교통외근경찰 소모품 등 1,660,461원*31개서*4분기 = 205,898천원</li> <li>- 교통외근경찰 계절 용품 지원 160,000,000원*1회 = 160,000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외근 활동 지원 = 213,525천원</li> <li>- 교통외근경찰 소모품 등 53,381,250원*4분기 = 213,525천원</li> </ul>

- 다음으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 드론'을 2025년 도입 하였고, 2026년 예산에 유지·관리비(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2025년 드론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90만원(1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 1천만원\*으로 편성했음.
- ※ 보험료(대인대물 배상책임 50만원, 기체파손보험 600만원), 유지관리 소모품(배터리 3\*240만원, 프로펠러 2\*70만원, 착륙다리 2\*70만원)

### 〈 '드론 구매(자산및물품취득비) 및 운영(공공운영비) 등'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 유지비 = 9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비 및 수리비 등 400,000원*1대+500,000원*1대 = 900천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 운영비 =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등 1대*10,000,000원 = 10,000천원</li> </ul> </li> </ul>
	증감사유	
자산및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1대) 확보로 보험료, 수리비 등 운영비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시설업무 장비 지원 = 56,9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 구매 51,500,000원*1세트 = 51,500천원</li> <li>- 컴퓨터(캐드 프로그램 포함) 4,500,000원*1대+900,000원 = 5,400천원</li> </ul> </li> </ul>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 및 컴퓨터 등 교통시설업무 장비 확보로 장비 구매 예산 미편성</li> </ul>		

### 〈 드론 활용 계획 〉

#### ① 서울시-서울청 간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연계

- 드론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TOPIS 상황실-서울청 교통정보센터 간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 교통관리·단속 등 활용



#### ② 다양한 교통업무에 활용, 스마트 교통관리 체계 구축

- ('24년) 市 교통실 드론 활용, 교통시설 개선 효과분석 등 실시(단속 제외)

- ('25년) 서울청 드론 운용, 두바퀴차(이륜·PM·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구성길 정체 구간 교통관리 지원 등 교통업무 시 폭넓게 활용

- ▶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전·후 효과 분석** : 주변 도로 포함 전반적인 교통흐름 모니터
- ▶ **상습정체구간 신호 개선 전·후 효과 분석** : 차량 대기길이, 차량 속도 등
- ▶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시 교통관리** :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 지원
- ▶ **휴가철 및 명절(설·추석) 구성길 등 정체구간 교통관리 지원** : 실시간 화면 제공
- ▶ **현수막 부착, 교통정책 홍보** : 대형 행사(반려견순찰대 선포식 등) 시 활용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드론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TOPIS 상황실과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간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관리·단속 등 다양한 교통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드론의 1회 운용 시간은 평균 25분 내외로,<sup>2)</sup> 1대의 드론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와 드론의 추가적인 구입 등 적정 운용시간 확보를 위한 효율적 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TOPIS(Transport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는 서울의 전체 교통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종합교통관제센터로, TOPIS는 버스 관리 시스템(BMS), 교통 카드 시스템, 무인 감시 시스템, 서울 교통방송, 서울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교통 관련 기관으로부터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수행함.
- ※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https://www.spatic.go.kr/>)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 주요도로에 설치된 890대의 교통 CCTV를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첨단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교통관리를 수행함.

2) DRONE MAGAZINE, “드론의 비행시간을 늘려줄 해답”, 2024년 3월 6일자에서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드론의 규격에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튬폴리머 배터리로는 평균 20~30분 내외의 짧은 비행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미주중앙일보, “드론 조종...현장 즉각 출동해 요원들 눈 역할”, 2024년 11월 1일자에서는 “드론은 평균 25분간 비행할 수 있으며, 2대의 드론을 교대로 사용하고 6대의 여분 배터리를 보유해 비행 시간을 극대화한다”고 하고 있음.

## 타)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 동 사업은 과속·신호위반 등에 대한 합리적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11억 8천 6백만원) 대비 25.0% 증액한 14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616,000	1,186,000	1,483,000	297,000	25.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6,000	1,186,000	1,483,000	297,000	25.0

### 〈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자산 및 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단속장비 구매 = 1,61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속 7대*20,000,000원 = 140,000천원</li> <li>- 다기능 36대*31,000,000원 = 1,116,000천원</li> <li>- 후면 8대*30,000,000원 = 240,000천원</li> <li>이동식 6대*20,000,000원 = 120,000천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단속장비 구매 = 1,48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속 16대*18,000,000원 = 288,000천원</li> <li>- 다기능 40대*18,000,000원 = 720,000천원</li> <li>- 후면 25대*19,000,000원 = 475,000천원</li> </ul> </li> </ul>
<b>증감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연수(7년) 경과 장비(182대) 중 부품 수급 및 수리 불가한 81대 불용 철거 후 대체 장비 설치</li> <li>○ 과속, 다기능, 후면 무인단속장비의 구매 단가 하향 조정</li> </ul>		

※ 무인단속장비는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6의2)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 동 사업은 2023년에는 17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1차 구매 후, 낙찰차액으로 2차 구매를 추진했음에도 13억 5천 4백만원만 집행하고, 23.4%(불용액 4억1천4백만원)를 불용 처리했으며, 2024년 23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억 6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2.0%(불용액 4천 7백만원)를 불용 처리했음.

####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2022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1,221,000	813,252	320,878	86,870	7.1
2023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1,768,000	1,353,527	0	414,473	23.4
2024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2,313,000	2,265,916	0	47,084	2.0
2025 (10월)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1,186,000	508,371	-	677,629	-

※ 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을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 다만, 2024회계연도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은 총 66대(과속 6대, 다기능 29대, 후면 31대) 구매를 위하여 23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구매 실적을 보면 139대를 구매 후 4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

(단위 : 천원, 개)

사업명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구매계획	구매실적
무인단속 장비 구매 (전환사업)	'22년	1,221,000	1,134,129	39	54
	'23년	1,768,000	1,353,527	58	88
	'24년	2,313,000	2,265,916	66	139
	'25년	1,186,000	508,371	57	51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8월 28일 별도 제출자료

###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방식	입찰자	낙찰자	예산금액	계약금액	비고
2022년	2단계 경쟁입찰	아이티인 등 3개 업체	에스티엔씨	1,221,000	827,110	
	2단계 경쟁입찰	건아정보 등 2개 업체	건아정보	386,600	320,878	
2023년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등 5개 업체	진우산전	1,868,000	1,061,607	
	2단계 경쟁입찰	토페스 등 2개 업체	토페스	818,000	410,000	
2024년	경쟁입찰(이동식)	에스에스티등13개 업체	에스에스티(이동식)		73,142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등 4개 업체	진우산전(전면)	2,313,000	551,853	
	2단계 경쟁입찰	건아정보 등 3개 업체	건아정보(후면)		496,000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등 3개 업체	진우산전	1,192,005	588,500	
	제3자 단가계약	-	진우산전 등 3개 업체	603,505	556,421	
2025년	2단계 경쟁입찰	건아정보 등 4개 업체	토페스	1,186,000	880,509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8월 28일 별도 제출자료

-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함에 따른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6년 예산 편성에 최근 4개년도 실계약 평균단가 수준으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단가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후면단속장비’ 구매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 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것으로, 전년(2억4천만원) 대비 97.9% 증액한 4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후면무인단속장비’ 설치에 있어서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륜차의 안전운전에 대한 계도 및 적극적인 단속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후면 단속장비’ 설치 확대와 동시에 이륜차에 대한 안전운전 홍보 및 현장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아울러, 향후 5개년 무인단속장비 교체 전망을 보면 2028년부터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향후 5년간 내용연수(7년) 경과 무인단속장비(종류별) 현황 〉

(단위 : 대)

구 분	합 계	과 속	다기능	구 간	후 면	이동식
2026년 (~'18년)	261	57	194	2	-	8
2027년 ('19년)	117	9	88	20	-	-
2028년 ('20년)	570	119	447	4	-	-
2029년 ('21년)	657	231	400	24	-	2
2030년 ('22년)	360	73	268	8	6	5

※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386면

## 파)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및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은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회선사용료, 보험료 및 정기검사비 등의 공공요금 지출과 단속예고 표지판 설치, 불용처리 및 장비 이전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20억3백만원) 대비 9.6% 증액한 21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2,003,427	2,003,427	2,196,022	192,595	9.6
공공운영비	2,003,427	2,003,427	2,196,022	192,595	9.6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의 회선사용료, 보험료 및 정기검사비 등의 공공요금 지출과 단속예고 표지판 설치, 불용처리 및 장비 이전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26억 7천 4백만원) 대비 19.4% 증액한 31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2,674,252	2,674,252	3,194,327	520,075	19.4
공공운영비	2,674,252	2,674,252	3,194,327	520,075	19.4

※ “스쿨 존(School Zone)”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주체 관련 〉

#### ◦ 무인단속장비와 자치구 CCTV 비교

구 분	일반 무인단속장비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방범용 CCTV
설치목적	교통단속	교통단속	교통단속	범죄예방·수사
설치권자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시장등(특별시장)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시장등(특별시장)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시장등(특별시장)	별도 규정 없음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4조의2 ·도로교통법 제12조4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4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범죄 예방 및 수사를~)
과태료부과·징수권자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시장등(특별시장)	해당 없음
운영장소	서울경찰청 영상단속실	서울경찰청 영상단속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정하고 있음.

- 스쿨존 장비는 자치구-서울경찰청 간 무상대부계약\*에 따라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 설치 및 운영·관리 주체 〉			〈 관리비용 주체 〉		
구 분	설치 (소유권)	운영·관리 (무상대부계약)	대부기간 동안 관리비용		
			초기 2년	2년 이후	
주 체	자치구	서울경찰청	하자책임 보증기간(2년)	납품업체	서울경찰청
			전기·통신·보험 등 비용	자치구	

-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효과 등으로 장비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서울시의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 대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 2023년에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운영비가 2026년부터 반영되어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은 전년(26억7천4백만원) 대비 19.4% 증액된 31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2024년에 설치된 121대의 운영비는 2027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의 부담도 증가가 예상되는바,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서 2025년 예산안에서 운영비를 내는 대수는 1,200대 ('20년, '21년, '22년 설치 1,200대)이고, 2023년에 설치된 253대는 2026년 예산 편성 시 운영비에 포함되고, 2024년에 설치된 121대는 2027년 예산 편성 시 운영비에 포함될 예정임.

#### 〈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25년 10월 기준) 〉

(단위 : 대)

구분	총계	고정식				이동식
		소계	과속	다기능 (과속·신호)	구간	
합 계	2,628	2,605	626	1,909	70	23
일 반	978	955	129	756	70	23
스쿨존	1,650	1,650	497	1,153	-	-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하)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 동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다중운집행사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의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년(2천만원) 대비 100.0% 증액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20,000	20,000	40,000	20,000	100.0
사무관리비	20,000	20,000	40,000	20,000	100.0

### 〈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회의 운영 등 = 20,000천원</li> <li>- 문구류·교육자료 구입·사무용품 = 20,000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등 회의 운영 시 필요물품 등 = 25,000천원</li> <li>- 문구류, 교육자료, 사무용품 구입 = 30,000천원</li> <li>- 긴급행사 지원(회의진행, 물품구매 등) = 10,000천원</li> </ul>
<b>증감사유</b>		
<b>○ 다중운집행사 수요증가에 따른 회의 필요 물품, 긴급행사 지원 등 예산 증액</b>		

- 서울시의 다중운집행사는 계속 증가('23년 915건, '24년 1,167건, '25년 8월 828건)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현장관리 및 사후보고 하는 다중운집행사도 증가('23년 19건, '24년 27건, '25년 9월 20건)하고 있음.

〈 2023년 ~ 2024년 9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다중운집행사 지휘·의결행사 현황 〉

구분	회의일자	안건명	비고
1	'23.3.27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0차 의결
2	'23.4.18	「여의도 봄꽃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3	'23.4.18	「루이비통 패션쇼」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4	'23.4.18	「서울페스타 2023」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5	'23.4.18	「강남뮤직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6	'23.4.18	「성북세계음식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7	'23.6.13	「BTS 10주년 FESTA」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7차 의결
8	'23.6.27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9	'23.6.27	「라틴아메리카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10	'23.6.27	「서리풀페스티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11	'23.6.27	「서울뮤직페스티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12	'23.6.27	「한성 백제문화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13	'23.8.10	「2023 잼버리 K-팝 공연·폐영식」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4차 의결
14	'23.9.19	「건군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7차 의결
15	'23.9.26	「서울세계불꽃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6	'23.9.26	「핼러윈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7	'23.9.26	「구로G페스티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8	'23.9.26	「강남페스티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9	'23.9.26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	'24.1.23	「서초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12차 의결
2	'24.1.23	「제94회 동아마라톤」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12차 의결
3	'24.1.23	「응봉산 개나리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12차 의결
4	'24.3.19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5차 의결
5	'24.4.2	「4.19혁명 국민문화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6	'24.4.2	「홍대레드로드페스티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7	'24.4.2	「서울페스타 2024」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8	'24.4.2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9	'24.4.2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10	'24.4.2	「중랑 장미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11	'24.4.2	「강북페스티벌2024」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12	'24.5.30	「쉬엄쉬엄 한강3종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35차 의결
13	'24.7.10	「쿠팡 플레이 시리즈」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4	'24.7.10	「드론 라이트쇼」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5	'24.7.10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6	'24.7.10	「구로G페스티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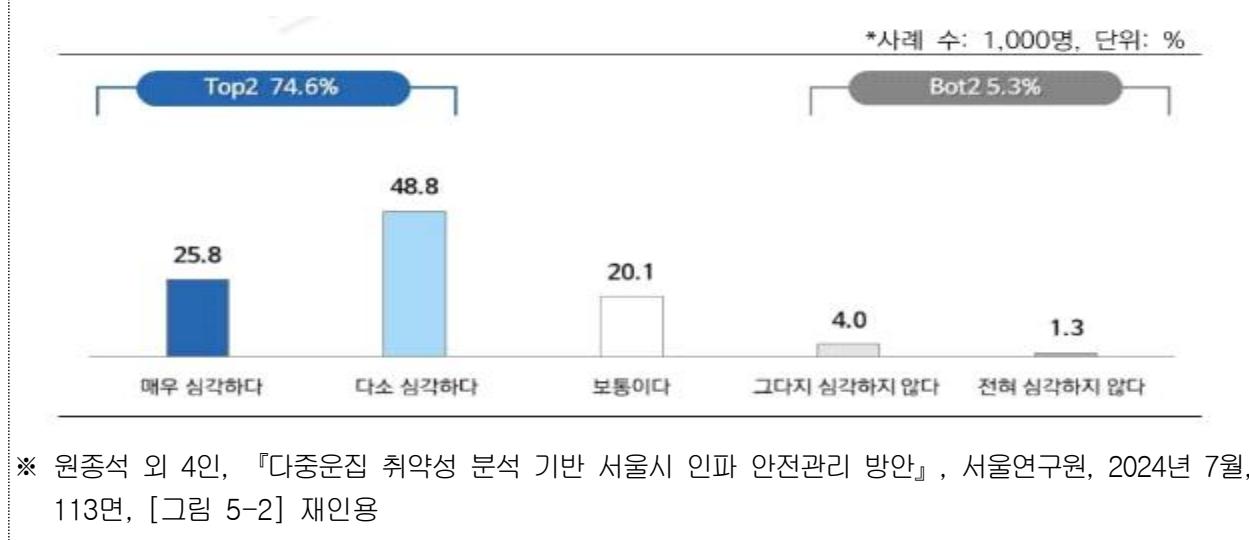
17	'24.7.10	「서리풀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8	'24.7.10	「한성 백제문화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9	'24.7.10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20	'24.9.25	「국군의 날 시가행진」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1	'24.9.25	「은평 누리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2	'24.9.25	「관악 샤로수길 로컬이벤트」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3	'24.9.25	「서울세계불꽃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4	'24.9.25	「크리에이티브X성수」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5	'24.9.25	「강동 선사문화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6	'24.9.25	「핼러윈데이」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7	'24.9.25	「제야의 종 타종행사」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1	'25.1.8.	도봉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0차 의결
2	'25.1.8.	2025서울마라톤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0차 의결
3	'25.1.8.	석촌호수 봄꽃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0차 의결
4	'25.1.8.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0차 의결
5	'25.3.26.	4.19혁명 국민문화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8차 의결
6	'25.3.26.	부활절 퍼레이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8차 의결
7	'25.3.26.	연등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8차 의결
8	'25.3.26.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8차 의결
9	'25.3.26.	서울스프링페스타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8차 의결
10	'25.3.26.	중랑 서울장미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8차 의결
11	'25.3.26.	노원수제맥주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8차 의결
12	'25.3.26.	쉬엄쉬엄 한강3종 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68차 의결
13	'25.7.23.	쿠팡플레이시리즈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80차 의결
14	'25.7.23.	드론라이트쇼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80차 의결
15	'25.7.23.	크리에이티브X성수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80차 의결
16	'25.7.23.	구로G페스티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80차 의결
17	'25.7.23.	서리풀페스티벌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80차 의결
18	'25.7.23.	한성 백제문화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80차 의결
19	'25.7.23.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80차 의결
20	'25.7.23.	서울세계불꽃축제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80차 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97면 재인용.

- 또한,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인파사고가 심각하다고 인식(서울시민 10명 중 7명(74.6%)은 다른 재난 유형과 비교했을 때 인파사고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인파사고가 1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8.2%)하고 있으며,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원인은 축제, 행사, 집회 등이 79.2%,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는 대규모 축제·행사·공연 등의 주변 지역이 70.6%, 다중운집행사가 인파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sup>3)</sup>

### 〈도시 재난 대피 인파사고 심각성〉



※ 원종석 외 4인,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2024년 7월, 113면, [그림 5-2] 재인용

- 더욱이, 안전한 다중운집행사는 사후대응보다 사전대책이 더 중요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다중운집행사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를 활용한 사전관리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다중운집행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다중운집행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적정한 예산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무관리비’로 회의자료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입간판 등 물품 구매는 가능하나 현장 출동 경찰대원에게 필요한 물품(생수 등) 집행은 불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대원의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업무추진비 등) 편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3) 원종석 외 4인,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2024년 7월 113-116면 참조.

## 거)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

- 동 사업은 한강경찰대 본대의 노후화, 한강 상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대 이전·신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촌센터(한강 이촌공원내)를 여의도(한강 여의도공원내, 여의도동 86-7)로 이전·신축(지상 2층)하기 위한 '시설비' 등으로 30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437,959	437,959	3,097,711	2,659,752	607.3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10,000	△100.0
시설비	427,959	427,959	2,766,373	2,338,414	546.4
감리비	0	0	324,625	324,625	신규편성
시설부대비	0	0	6,713	6,713	신규편성

-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2025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설계공모가 2025년 9월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는 2026년 4월 완료할 예정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완공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되어, 2026년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만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한강변에 설치하는 부상식 구조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설계공모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나, 설계상 고려할 특수성 및 우기철 공사 자연 가능성 등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면밀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은 한강경찰대 4개 센터 이전의 첫 사업으로 일정 자연 시 다른 센터 이전 사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업 일정 자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또한, 한강경찰대 센터 시설 개선 예산은 전액 서울시가 자체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사무가 전환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강경찰대 센터 이전 및 신축 사업 등 자치경찰사무 장비 개선 등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정부 건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채 태 준
---------	-------	-------	-------